

# 대학기획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9.09.01	1차 개정	2012.02.10
2차 개정	2012.09.01	3차 개정	2014.04.01
4차 개정	2014.08.08	5차 개정	2015.02.01
6차 개정	2018.06.01	7차 개정	2018.09.10
8차 개정	2020.08.24	9차 개정	2022.05.02
10차 개정	2022.10.0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위원회는 우송정보대학의 장·단기발전과제, 구조조정사업 및 특성화과제를 연구하고, 그 구현방안을 총장에게 건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 위원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 한다.

1. 대학발전을 위한 장·단기발전계획 및 경영전략수립
2. 대학의 구조조정 및 특성화사업연구 및 운영방안 수립
3. 대학자체평가사업 연구 및 운영방안 수립
4. 각종 행정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5. 교내 각부서 발전계획의 종합 및 조정
6. 위 각호의 과제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 제2장 구성 및 임원

**제3조(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1. 부총장,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산학협력단장, 성과관리혁신실장, 총무처장 <개정 2018.6.1., 2018.9.10., 2020.08.24., 2022.5.2., 2022.10.4.>
2. 전임교원 중 10인 이내의 연구위원

**제4조(임원)** ①이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6.1.>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호의 위원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1.>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간사)** 이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3장 전체회의 및 연구위원 회의

제7조(회의의 구분) 이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연구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8조(전체회의) 이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위원회의 중점과제 및 추진 우선순위 결정
2. 대학발전을 위한 여론 및 의견의 수렴
3. 연구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심의
4. 기타 이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의 심의

제9조(연구위원 회의) 이 위원회의 연구위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교육혁신본부장,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2.10.4.>

1. 이 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위임한 과제의 조서연구
2.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소위원회구성 및 운영
3. 이 위원회에 제출된 각부서의 발전계획 및 제안의 1차 심의
4. 이 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제10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이 위원회에는 전체회의 또는 연구위원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과제를 한시적으로 연구조사 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학내외 인사를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장 기타 사항

제12조(회의록) 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이 위원회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비 및 운영비등은 교비 및 기타 기탁금에서 지원한다.

### 제5장 규정 개정

제14조(운영세칙) 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규정개정 등) 이 위원회의 규정 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언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